

부산지식재산센터 해외출원 지원사업

□ 사업목적

-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

□ 지원대상

-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(IP기반해외진출지원) 기업 (2023~2025년 선정기업)

□ 지원내용

- 해외 특허, 상표,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,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컨설팅도 병행하여 제공

※ 개별국 직접출원, PCT출원, 마드리드 상표출원, 헤이그 디자인출원 등 해외 지식 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

※ 신청 시 출원건(단위)별로 나누어 작성 제출 요함.

예) PCT(국제), 개별국(미국, 중국)을 원하는 경우, 건별로 3개로 나누어 신청

※ 신청 시, 우선권주장을 위한 출원이 있는 경우, 반드시 국내(또는 PCT) 출원명세서를 제출 (특허, 디자인에 한함, 기타관련서류란에 첨부)

※ 협약일 이전 출원완료 건 지원불가

□ 지원기준

- 공통기준 : 등록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지역센터로부터 세부 지원사업 선정 후 컨설팅을 받은 건에 한함

○ 개별기준

- 권리별 개별국 지원 :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
(단, 국문명세서 제출)

- PCT출원 국제단계 :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
(단, 국문명세서 제출)

-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: 국내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
※ 마드리드의 경우 1국가 지정만 가능하며, 사후지정출원건 사업제외

-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: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

○ 기타 참고사항

-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(단,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외)

-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
- 변경출원, 분할출원,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(상표) 건 지원 불가
- 대리인(변리사)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
- 출원무효,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
-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불가
-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
-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,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
- 공동출원인 경우,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

기업분류	공동출원 대상자
법인기업	중소기업, 개인사업자(대표자), 대학,
개인사업자(대표자)	정부출연연구기관

※ 공동출원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제출 필수

□ 지원규모

구분		지원금액 (기업분감금 제외)	기업분담금
특허	PCT 출원	2,200 천원 이내	현금 40%
	유럽	5,700 천원 이내	
	일본	4,000 천원 이내	
	미국	3,900 천원 이내	
	중국	3,500 천원 이내	
	동남아/기타	2,800 천원 이내	
	상표	마드리드 및 개별국	
디자인	헤이그 및 개별국	2,100 천원 이내	
		2,400 천원 이내	

※ 해외권리화의 경우 2025년부터 현금 40% 부담으로 변경되었음.

□ 사업문의 : 한동권 전문컨설턴트 (051-714-6290)